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고과평가 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19조 제4장에 따라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서 근로하는 직원의 성과급 지급과 인사 관리, 승진 등에 반영할 고과평가와 가감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단, 박사후연구원, 연구과제참여인력, 보조인력 등 기타인력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평가기간 및 평가시기) 정규직원의 평가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평가는 매년 1월 중에 실시하며 계약직원은 계약종료 1개월 전에 실시한다. 단, 근무평가일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평가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조(평가결과의 활용) 고과평가와 가감평가는 직원의 성과급 지급과 인사관리, 승진 등에 활용한다. 단, 가감평가 중 경력평가는 승진 시에만 활용한다.

제 2 장 고과평가

제5조(평가원칙) 고과평가는 해당 직원의 업무성과와 역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1.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2.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3. 평가대상자 직무의 내용과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제6조(근무평가서) 평가대상자는 지정기간에 [별표 1]을 작성하여야 하고, 평가자는 이를 업무성과 평가에 활용한다.

제7조(평가구분 및 항목 등) ① 고과평가는 단장, 부단장, 팀(실)장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 하되, 필요에 따라 직종별, 직급별, 직무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직원은 업무성과(60%)와 역량(40%)을 평가한다.

③ 대상자별 고과평가표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평가기준 및 반영비율 등) ① 고과평가점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대상자별 평가자 및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자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	
	평가자	비율	평가자	비율	평가자	비율
정규직원	팀장급	60%	부장급 이상	30%	산학협력단장	10%
계약직원	팀장급	50%	부장급 이상	50%	-	-

② 평가대상자가 겸임하는 경우에는 직제상 선임 2개부서 평가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고, 팀장이나 부서장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상위의 보직자가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

요에 따라 인사부서의 장이 평가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평가방법 등) ①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정규직원 3차 평가와 계약직원 평가는 절대평가를 한다.

② 상대평가 기준 및 적용방법은[별표 3]과 같다.

③ 평가대상자가 전보 된지 3개월 미만일 때에는 직전 부서의 평가자가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휴직, 직위해제, 특별한 사유 등으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법정휴직, 상병으로 인한 휴직, 파견,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평가점수를 해당년도 평가점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등급 및 성과급 지급 등) ① 직원의 평가등급은 고과평가점수, 가감평가점수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기본항목						평가점수				참고사항	등급
연번	성명	직급	직책	소속	최초 임용일	고과 평가	가산점		감산점		
							교육 훈련	포상	징계 경고	합계	

1. 정규직원의 평가등급은 5단계로 구분하며 성과급 지급은 고과평가와 가감평가(경력평가가 제외) 점수를 합한 최종 점수로 하며 성과급은 별도로 정한다.

등급	S	A	B	C	D
범위	95점 이상	90점 이상 95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60점 이상 80점 미만	60점 미만

2. 계약직원의 평가등급은 다음과 같으며 D이하는 계약을 종료한다.

등급	점수 범위	비고
A	90점 이상 100점 이하	
B	80점 이상 90점 미만	
C	60점 이상 80점 미만	
D	60점 미만	

②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급은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가감평가

제11조(교육훈련평가) ① 교육훈련은 의무교육, 역량교육, 법정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교육훈련점수는 시간당 0.2점씩 가산하되 연간 4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교육종별 연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육구분	직 원	비 고
의무교육	4시간	인사부서 주관(학교차원의 행사 및 공동체 교육 등)
역량교육	10시간	소속부서 주관(소속부서 업무관련 역량교육)
법정교육	6시간	인사부서 주관(성희롱예방, 소방교육 등)
계	20시간	

④ 휴직, 직위해제, 파견,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평균점수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포상, 징계 및 경고 평가) ①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점수를 가산하되, 연간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무총리 이상의 포상: 0.5점
2. 장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포상: 0.3점
3. 우리 대학교 총장 및 산학협력단장의 포상
 - 가. 공로상, 업적우수상 및 이에 준하는 포상: 0.3점
 - 나. 모범상 및 이에 준하는 포상: 0.2점

② 징계나 서면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점수를 감산하되 연간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구분	정직	감봉	견책	산학협력단장 서면경고
감점	3.0	2.0	1.0	매 회 0.5점

제13조(경력평가) ① 승진후보자로서 승진소요연수에 도달한 자에 대해서는 승진소요연수 초과경력 6개월에 대해 0.5점씩 가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4점을 초과할 수 없다. 승진일자가 3월 1일 또는 9월 1일인 경우 해당 학기 5개월에 대해 0.5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승진후보자로서 군복무(병역의무이행)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군 경력 5개월에 0.5점씩 가산하되, 최대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 장 승진후보자 추천

제14조 (승진후보자 대상) 승진후보자 대상은 산학협력단 정규직원으로 한다.

제15조 (승진후보자 명부) ① 명부는 직급별 승진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고과평가점수, 가감평가점수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기본항목							평가점수							참고사항	승진대상제청여부
추천 순위	성명	직급	직책	소속	최초 임용일	현직 임용일	고과 평가	가산점		감산점	경력가산점		합계		
								교육 훈련	포상		징계 경고	초과 경력			

② 승진후보자 명부는 1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③ 고과평가는 100점, 교육훈련평가는 4점 만점을 기준으로 직급별 승진소요연수에 해당하는 최근 점수를 평균한다.

④ 포상 가산점은 해당 직급에서 받은 점수를 합산하되, 최대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징계나 경고 감산점은 직급별 승진소요연수에 해당하는 최근 점수를 합산한다.

제16조(동점자의 우선순위) 해당 직급 승진후보자 중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고과평가점수, 초과경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업무성과보고서

평가대상기간: 0000년 1월 1일 - 0000년 12월 31일					
소속	성명	직급	현 직급임용일	산단 임용일	현 부서임용일
담당업무(200자 내외 작성)					
평가기간 중 업무성과 및 업무실적(4항목 이내, 6하 원칙에 의거, 총 1600자 내외 작성)					

【별표 2】

산학협력단 직원 고과평가표
(평가자: 산학협력단장)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범위	평가점수
업무성과 및 역량	100	100~40	

※ 평가방법: 절대평가

산학협력단 직원 고과평가표
(평가자: 팀장급, 부장급 이상)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비고
			S	A	B	C	D	
			1.0	0.9	0.7	0.5	0.4	
업무 성과 (60)	1. 업무의 양	15						
	2. 업무의 질	15						
	3. 성과의 공헌도	15						
	4. 성과의 중요도	15						
역량 (40)	5. 직무지식	10						
	6. 업무추진능력	10						
	7. 책임성/청렴성	10						
	8. 팀워크/협조성/ 행정서비스	10						
						합계	점	

※ 평가방법

- 정규직원: 상대평가 [별표 3]
- 계약직원: 절대평가 [별표 3]의 평가대상 1명을 기준으로 함

【별표 3】

상대평가 기준 및 적용방법

1. 평가등급 및 평가

평가항목별 S, A, B, C, D등급으로 평가

2. 각 등급별 점수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등급별 점수	1.0	0.9	0.7	0.5	0.4

3. 평가점수산정

가.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평가항목별 배점에 등급별 점수를 곱하여 산정

나. 평가자별 평가점수: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함(단, 평가단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함)

4. 상대평가 기준 및 적용방법(평가항목 8개 기준 예시)

구 분	평가항목수 합 계	S등급 평가항목수	A등급 평가항목수	B등급 평가항목수	C등급 평가항목수	D등급 평가항목수
	(100%)	(25% 이하)	(50% 이하)	(75% 이하)	(50% 이하)	(25% 이하)
평가대상 1명	8개	2개 이하	4개 이하	6개 이하	4개 이하	2개 이하
평가대상 2명	16개	4개 이하	8개 이하	12개 이하	8개 이하	4개 이하
평가대상 3명	24개	6개 이하	12개 이하	18개 이하	12개 이하	6개 이하
평가대상 4명	32개	8개 이하	16개 이하	24개 이하	16개 이하	8개 이하
평가대상 5명	40개	10개 이하	20개 이하	30개 이하	20개 이하	10개 이하
.	.	.	.	.	.	.
.	.	.	.	.	.	.
.	.	.	.	.	.	.
평가대상 20명	160개	40개 이하	80개 이하	120개 이하	80개 이하	40개 이하

※ 평가대상자가 3명인 평가자의 경우, 평가대상자별 평가항목이 8개인 관계로 총 24개의 항목을 평가하게 되며, 평가대상자 1명에게 S등급을 5개를 부여하게 되면, 나머지 평가대상자 2명에게는 S등급을 1개 밖에 부여하지 못하게 되므로 신중히 평가하여야 함.